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12월 2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매출액의 추정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강화 사항 없음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의 추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법 제21조제1항”을 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제23조제2항 중 “법 제21조제1항”을 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6 “과징금의 부과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”을 “과징금의 부과기준(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”으로 하고, 제2호가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: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(과거 실적, 사업계획, 시장 상황 등을 고려)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매출액의 산정방법 등) ①·② (생략) 1. (생략) 2. <u>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</u>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2조(매출액의 산정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삭제> 3. (현행과 같음) <u>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 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의 추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</u>
제23조(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) ① <u>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</u>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<u>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</u> ③~⑤ (생략)	제23조(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) ① <u>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</u> -----.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<u>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③~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926